

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 노인인권교육

교육강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



# 목차

- I.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 II. 인권의 이해
- III. 노인인권의 이해
- IV. 인권증진의 책임

# I

##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소개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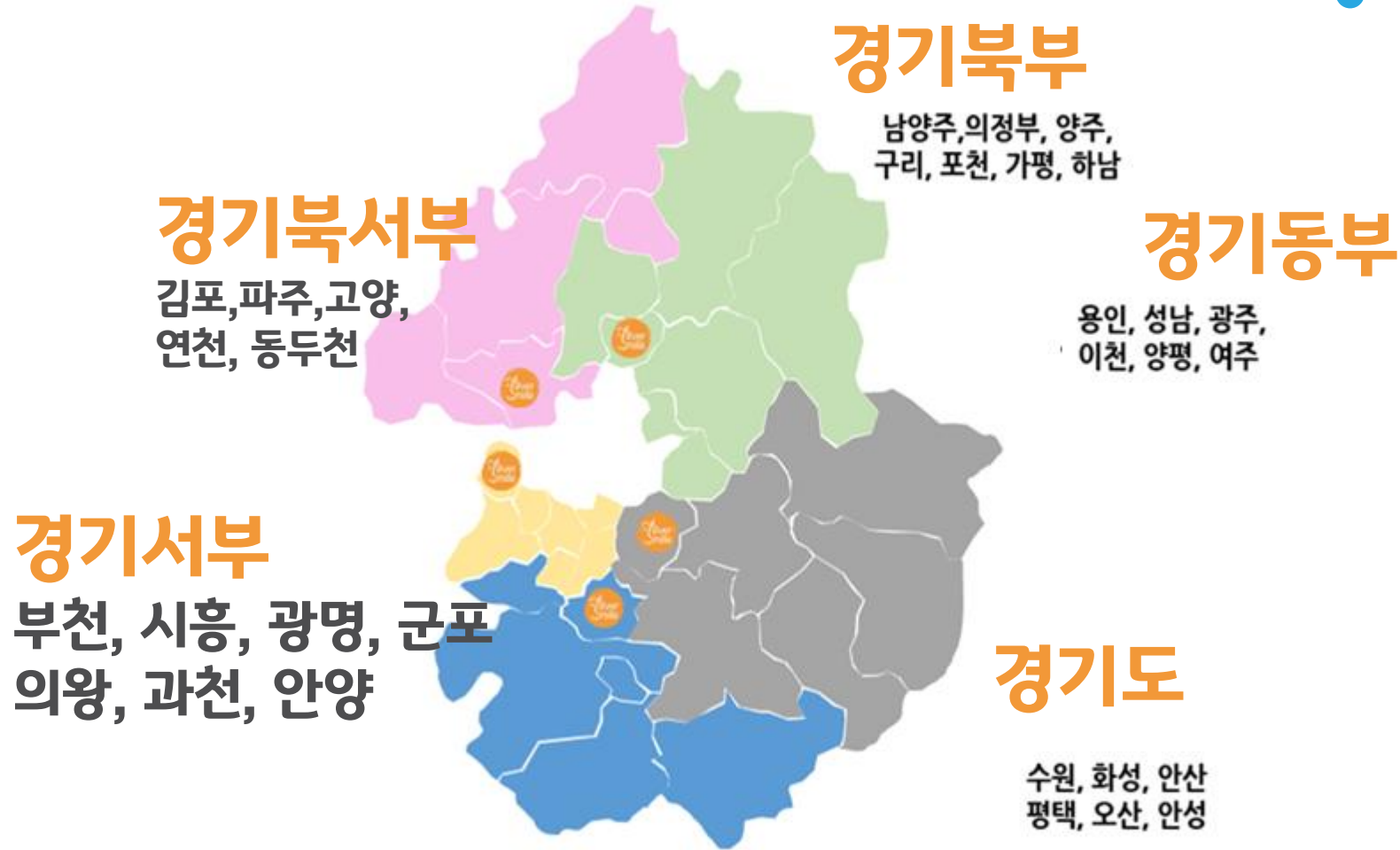
## 역할

설립 : 2020.1.29.

-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공공성, 전문성, 인권존중,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신뢰 높은 돌봄 제공, 경기도민의 행복한 돌봄 기본권 실현



#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 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 홍보

언론홍보, 캠페인  
학술행사, 이동상담  
카툰 및 사진전시회



## 체계구축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자원봉사 사업

## 상담

전문상담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의료, 법률지원 연계

## 인권보호

노인인식 개선사업  
효행교육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19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설치)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입소기간**

4개월(최장 6개월)



**긴급보호**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와 숙식제공  
쉼터 생활 지원

**재발방지**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심신안정**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사회적응**



법률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지원

**의료비지원**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인권의 이해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인권의 흐름과 분류

# 여러분의 생각은?



VS



벌거벗은  
세계사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과 슬럼가의 비극  
산업혁명의 어둠 3. 슬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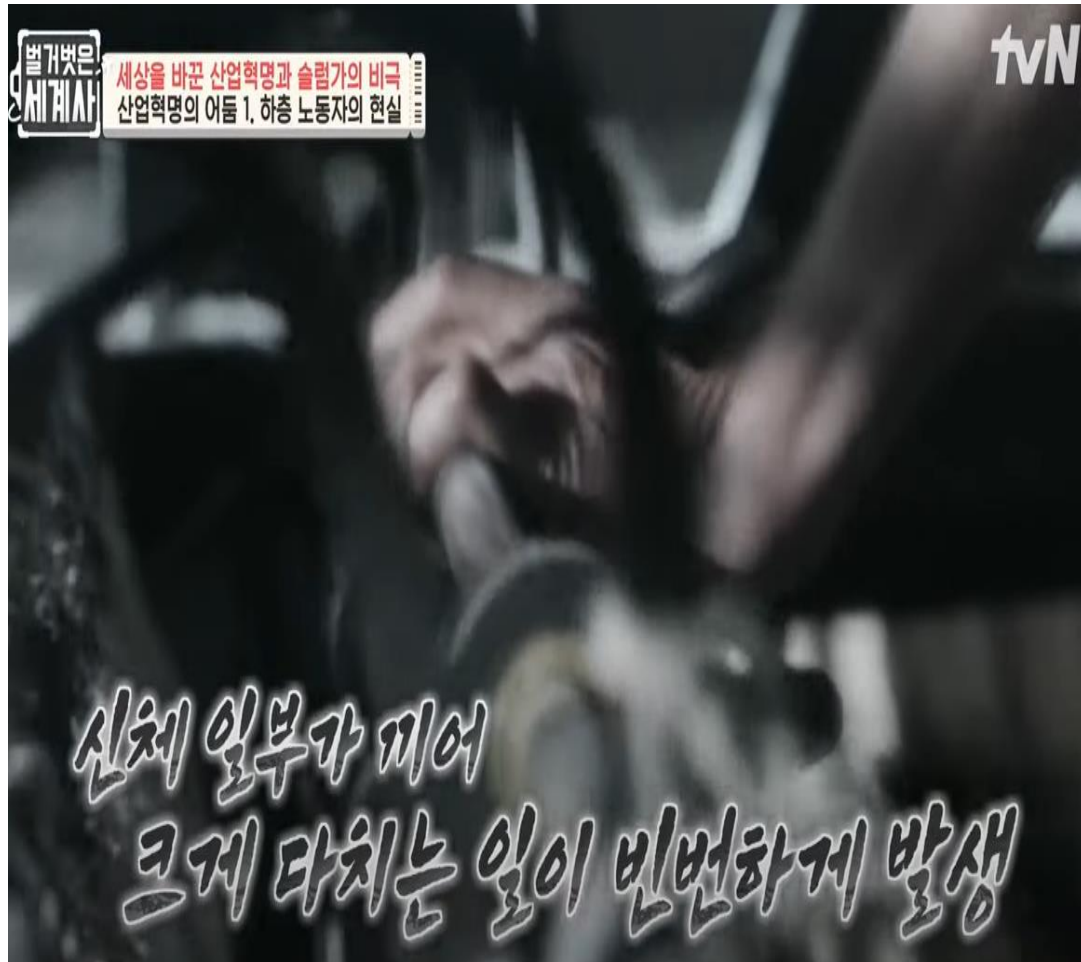
벌거벗은  
세계사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과 슬럼가의 비극  
산업혁명의 어둠 3. 슬럼가

tv



#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_\_\_\_\_ 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_\_\_\_\_가 필요하다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_\_\_\_\_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_\_\_\_\_ 책임이 있다.

나에게 인권이란 \_\_\_\_\_이다.

# 사람답게 살기 위한 국가의 개입 정도?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 (야경국가)
2.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사회권 보장 확대)



YTN

NEWS  
출발

치매 노인 머리채 잡고 폭행한 요양보호사... CCTV 확보

치매 노인 머리채 잡고

요양보호사 폭행 CCTV



피해자 측 "두 달간 폭행 정황... 몰랐을 리 없다"

치매 노인 머리채 잡고

요양보호사 폭행 CCTV

요양원 측 "해당 보호사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

# 인권교육은 곧 인권운동이다.

## • 인권에 대한 교육 :

1.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함. (인권 이해 및 지식 습득)
2.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품성을 키우며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4.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5.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세계인권선언 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공동체와 사회전반에서 인권을 실현하는데  
우리의 공동의 책임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

# 인권옹호자

## 인권옹호자란

개인으로 혹은 타인과 함께 인권을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

## 인권옹호자의 최소 조건

- 인권의 보편성 인정
- 그 주장이 인권의 범위에 있어야 함.
- 평화적인 행동

## 종사자 인권교육 목표

- 인권보호 및 증진
-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인권의식 향상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중에서 \_ 국가의 역할 강화

### □ 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 강화

- 기관 지정 절차 및 진입요건 강화, 대표자 대면평가 등을 통해 기관 진입 시 운영 역량심사 강화 등 지정제 내실화('23~)
  - 전 기관 정기평가, 하위기관 수시·재평가 등 상시적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기관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 퇴출('25.12월~)
- \* 갱신기준 및 절차 마련('23) → 기관 대상 교육('24~) → 갱신심사('25.12월~)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중에서 \_ 국가의 역할 강화

- 장기요양기관의 상시적인 감염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배포('23.12월)
  -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환기설비 설치지원(3,595개소, '23~'25) 및 감염병 위기 시 요양시설 내 진료체계 정비(~'24)
  -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23.6월~), 현장조사 실효성 강화\* 등 노인학대 예방·대응 강화
- \* 조사 거부·방해자 과태료 부과(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 등)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제적 예방 및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 추진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사회복지의 목적: 인간의 존엄성 확보  
사회복지 가치: 평등, 자유, 정의, 연대와 통합

## 세계인권선언

인간이 지닌 권리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

인권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



# 인권의 개념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다수인 보호시설-노인복지시설 해당)

# 국제인권장전

유엔인권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9개 위원회)

: 조약 가입 당사국의 의무 이행 감시 위원회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강제실종방지위원회

# 차별행위의 기준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 행위**

**차별**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어느 한 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별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 원칙**)

**차별행위** : 누가, 누구에게, 누구와 비교하여 어떤 이유로 그 행위를 하였는가를 밝히는 과정

# 인권 >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

- **일반적 기본권** : 행복추구권,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로부터의 자유
- **사회적 기본권** :  
인간존엄에 대한 필수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보장과,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권리
-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이념
- 인간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와 책임**이 모두에게 있음
- 개별적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하는 구체적인 수단
- 존엄은 **나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 어떤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춰야 존엄할 수 있을까? 가 아닌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

계산불가능

대체불가능

비교불가능

# 권리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를 정하는  
제도적으로 정해 놓은 약속

정당하고 마땅한 것 → 타자에게 의무 부과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을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승인될 수  
있어야 함



출처 : 사람을 옹호하라\_류은숙지음.

# 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적 권리

<p>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p>	<p>개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p>	<p>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p>	<p>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p>
<p>존경과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p>	<p>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p>	<p>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p>	<p>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p>
<p>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p>	<p>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p>	<p>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p>	<p>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p>
<p>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p>	<p>시설 종사자의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p>		

#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모든 사람은 국가에게 법적근거로 행복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주체 : 모든 사람

의무주체 : 국가의 삼중 의무(존중, 보호, 실현)

법적근거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국가의 인권 책임

**존중** : 국가가 스스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 : 제3자에 대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충족**

**촉진/증진** : 완전한 권리실현을 위해 법적, 행정적, 재정적, 법적 조치, 권리증진을 위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야 한다.

**충족/제공** :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이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노력한다

## 제1조 2(기본이념)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사례판정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주 목적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의 노인인권과 권익옹호**

## 제1조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인권 침해 기준

**인권 = 국가를 대상으로 나의 권리를 요구할 때 사용**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만 한정하지 않음(법과 제도를  
초월한 권리)

인권은 국가가 자유를 억압하거나 보호와 보장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음.

**인권의 침해자는 국가이고,**  
침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발생함.

#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경우(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 당하는 사람의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됨

# 인권 침해 판단 흐름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인가?  
관련 기본권은  
존재하는가?

문제상황은  
어떤 유형인가?

검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국가가 직접 가해하는 경우,
- 법률유보의 원칙  
(국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법률적차원의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가?)
-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제한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인권의 흐름과 분류

## 1세대 인권 -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 18C 국가로부터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3.23 발효)/  
(한국 가입 1990.4.10/ 1990.7.10 발효)

### 시민적 영역(소극적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

### 정치적 영역(능동적 권리)

정치활동을 할 권리,  
사상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 인권의 흐름과 분류

## 2세대 인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 / 19세기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1.3 발효) / (한국가입 1990.4.10 / 1990.7.10 발효)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p>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근로권,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p>	<p>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p>	<p>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소수자 권리</p>

# 인권의 흐름과 분류

## 3세대 인권 - 집단적 권리 또는 연대의 권리/ 20세기

### 3세대 인권은 집단적 수준의 권리

개인에게 적용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국민, 국가, 지구촌에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개념,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 혜택을 받을 권리

-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인도적 구호를 받을 권리
- 환경권리(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 노인인권

- 노인인권 개념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사항

# 노인 인권의 개념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 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 적극적 의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연령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

## 소극적 의미

노인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자기 방임
7. 유기



# 인권보호 구제 절차

## 세계인권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이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 ○ 신체적 학대(잠재)

- 학대행위자(관계): 시설장

- 주요 학대행위 : 피해노인이 호흡곤란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생활 중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것을 의료인이 발견, X-ray 촬영 결과 고관절 골절, 6개월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측, 요양원측은 입소때와 동일하다고 주장, 피해노인은 말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통증 호소 불가.

- 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위반

○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례판정위원회 판단 결과 :

\* 요양원측은 주의를 통해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에 방임학대로 판단.

\* 알지 못하였다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발생 원인 뿐 아니라, 사후 조치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방임학대로 판정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 ○ 신체적 학대

- 학대행위자(관계): 대표자 A, 종사자(B,C)
- 주요 학대행위 : 피해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멍살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함.

- 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죄, 형법상 상해죄 보다 더 무거운 죄로 적용)

○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결과 : 대표자 벌금 300만원, 종사자(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 특이사항 : 피해노인노인과 종사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반의사불법죄 적용 X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 노인복지법과 반의사불법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재개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55조의 3, 제39조이 9, **제 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로 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이 없음.** (생략) 또한 형법 제260조 규정을 직접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 260조 제3항(반의사불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즉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법죄인 것과 달리, 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님.** 노인인권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피해의심 노인 혹은 부양의무자의 불처벌 탄원이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도 처벌할 수 있음.**

# 사례로 보는 신체적 학대 이해

## ○ 신체적 학대 \_억제대 사용 경우

- 보호자나 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긴급성, 비대체성, 일시성의 요건에 합당
- 학대행위자(관계) :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 사용
- 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학대경위: 종사자는 억제대 사용 동의가 되지 않은 입소노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낙상방지를 위해 행주크기의 천을 3번 접어 오른 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난간과 팔을 고정시킴(10~15분)
  - > 기관장은 다음날 보고를 받고 학대행위자 경위서 제출 요구, 행위자는 경위서와 사직서 제출
  - >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처분결과 : 1차 신체적 학대 판정 -> 2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인정 ,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근거

- 1) 평소 노인학대 예방교육 철저히 수행
- 2)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수급자 권리보장  
부분에 만점을 받기도 하는 등 평소 모범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
- 3) 억제대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진 신고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 **신체적 학대** \_ 수원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 구합 71766 판결

- **학대행위자(관계)** :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 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

- **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조

- **결과** : 1차 6개월 업무정지처분 -> 2차 취소

- **법원의 판단** \_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이해

## ○ 노인복지법 60조(양벌규정)

제 59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근거

- 1) 학대행위 발생전까지 소속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 2) 외부강사 초빙하여 치매예방 교육 실시
- 3) 시설의 원장, 국장 등 매일 아침조회를 주재하여 수급자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상태를 보고 받았고, 보호자 고지, 병원 전원 등의 대처방안 의논에 노력함.
- 4) 시설장은 학대경위를 발견하여 이를 자진하여 신고함.
- 5) 피해자 보호자가 시설을 위하여 탄원서 제출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 **신체적 학대** \_창원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구압31 판결

- **학대행위자(관계)**: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입소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 생활실 문을 밖에서 잠그는 행위
- **관련법률**: 사회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결과**: 개선명령처분 적법
- **해설**

시설은 야간에 입소 노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생활실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억제대 사용과 같은 신체를 결박한 것은 아니지만 입소 노인들이 자유롭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 판결은 위 학대행위로 인한 행정청의 처분(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이해

## ○ 신체적 학대

- 학대행위자(관계): 원장
- 주요 학대행위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 사용
- 학대판정 사유

학대피해노인이 본인의 팔 부위에 생긴 상처를 자주 뜯어내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양 손에 손 장갑 형태의 억제대를 씌우고, 피해자가 억제대를 벗겨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감아둠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을 가함.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억제대의 착용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억제대를 착용시킬만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억제대를 넘어 억제를 벗겨내지 못하도록 테이프까지 감아둔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한 갖추지 못한것으로 보임.

**행위자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례로 보는 정서적 학대 이해

## ○ 정서적 학대\_입소자에게 삿대질 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관계):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 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이 휠체어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삿대질을 하며 나무람.
  - 요양보호사 A 는 피해노인으로부터 휠체어를 뺏어 가는 행위와 피해노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위를 함.
  - 요양보호사 B는 피해노인이 엉덩이로 기어서 복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두 차례 보았으나 도움을 주지 않음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 세부유형으로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처분 : 종사자 교육 실시 등 향후 방지 대책 수립

# 사례로 보는 경제적 학대 이해

## ○ 경제적 학대\_입소노인 재산 횡령

- 학대행위자(관계):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 운영자가 입소노인들의 입소노인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
- 처분 : 노인복지법, 형법 횡령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법원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 입소한 경우, 시설의 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회계처리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보고를 전제로 함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이해

## 0 방임이란

- 노인복지법 39조의9 제3호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배경) 약자인 노인들이 의식주 등의 기본적 보호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치료행위를 선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방임행위로 처벌할 근거로 마련되었음.
- 노인복지법 금지행위 중 제 39조의9제3호는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는, 상주 의사가 없는 요양원 등을 염두에 둔 규정임. 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고려한 것임.
- 응급상황 혹은 응급상황이 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 등, 즉각적인 치료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이해

## 0 의료적 방임 학대

- 보호자가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숙식,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학대의 유형을 말함. 의식주 등의 기본적 보호의 소홀 이 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경우 (적극적 대처 V 소극적 대처)
-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방임학대**
  - 1)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여야 하고
  - 2) 부양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 3) 그대로 내버려 뒀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이해

## 0 사례판정 위원 의견

학대 아니다.	학대 이다
노인복지법 입법 목적에서 치료행위 소홀은 기본적 치료행위의 소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는 상주 의사가 없는 요양원 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고려한 것임.
절차상에서는 큰 무리 없이 충분한 조치를 다함	응급상황 혹은 응급상황이 될 때까지 가족 등의 부양의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요양원은 일상적 조치를 취함	증거사진으로 보건대 요양원의 대처는 미흡

**0 사례판정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이해

## 0 의료법상 “ 의료행위 ”

의료법	대법원
<p><b>의사</b>-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간주</p> <p><b>간호사</b>-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임무로 간주</p>	<p>“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시행하여 <b>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b> 의미함.</p>

0 노인복지법 제 39조9(금지행위) 에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해석 범위는 **치료행위의 주체자는 “의사”이다** 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며, 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고려한 것임.**

# 업무상 과실 판정 사례

## ○ 신입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알리지 않아

80대 노인을 혼자 두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요양원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 유지 인정

“요양원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 감안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1. 사건 당시 피해노인을 보호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 는 점을 알리지 않음.
2. 요양보호사는 피해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음.

**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IV

## 인권증진의 책임

- 인권 감수성
- 노인인권 존중실천 우수 사례
- 사회복지 인권 책무

## 우리 조직과 나는?

1	노인의 <b>요구사항, 불만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콜센터, 상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b>
2	노인의 <b>요구사항/불만</b> 에 대해서 <b>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b> (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음).
3	노인의 <b>요구사항/불만</b> 에 대해서 <b>기관이 부당하게 처우한다.</b> (예: 사전 통보 없이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거나 변경, 계약된 서비스 제공 거부)
4	안전위협이나 인권침해 시 <b>적절한 대처방법을 기관이 알려주지 않는다.</b> (예: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비상연락체계).
5	<b>운영규정을 설명해 주지 않거나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b>

# 인권 감수성

##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함



어떠한 행동선택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 봄



인권관련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



# 인권 감수성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 인권감수성과 직장 근무환경이 인간중심 돌봄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

2020.12.18.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발표자 : 이현주 관장

### 2. '인간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 요양시설 직원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기반 실천이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김민경 외2016)이며, 요양서비스 질에 있어 매우 중요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책무 담당





---

## 결론 및 제언

---



##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근무환경이 인간중심 돌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경기서부 권역 노인요양시설 직원 43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의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요양시설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역할갈등, 역할과다)와 조직문화는 인간중심 돌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 또한 인권교육 실시 횟수, 노인복지 분야 근무년수, 직원의 연령은 인권교육 체감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 결론 및 제언

-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지표를 사용.  
인권 옹호에 대한 능력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 선행연구 자료와 본 연구조사 결과 **직종**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의식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연구발표
<b>노인요양시설직원</b>	<b>1.90</b>	<b>2.06</b>	<b>1.78</b>	<b>본 연구조사</b>
간호대학생	2.38	2.41	2.40	2015.황주연 외
사회복지기관 직원	4.18	4.22	4.01	2016.이영순
경찰관 대상	3.01	2.51	2.59	2019.김성섭

## 직위에 따른 인간중심 돌봄 수준의 차이

직위그룹별 인간중심 돌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F=4.221$ , 유의확률( $p$ 값)=0.001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직위그룹의 인간중심 돌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통해 **시설장,상급관리자(사무국장,부장) 집단이 영양보호사,사회복지사,중간관리자 집단보다 인간중심 돌봄 인식이 높은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인간중심돌봄 (N=395)	요양보호사	249	3.61	0.50	4.221	0.001	TuKey 방법
	사회복지사	53	3.56	0.47			
	중간관리자(과장,팀장)	24	3.56	0.54			
	상급관리자(사무국장,부장 등)	14	3.83	0.34			
	시설장	11	4.10	0.39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44	3.65	0.54			

## 노인복지근무경력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수준의 차이

노인복지분야 근무경력 년수 그룹별 인간중심 돌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F=4.254$  유의확률( $p$ 값)=0.006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노인복지분야 근무경력 년수 그룹의 인간중심 돌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통해 **10년 근무경력 집단이 인간중심 돌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3년~5년미만의 집단이 가장 낮은 인간중심 돌봄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검증
노인 복지 근무 경력 (N=397)	3년미만	129	3.62	0.43	4.254	0.006	TuKey 방법
	3년~5년미만	109	3.53	0.53			
	5년~10년 미만	107	3.71	0.56			
	10년 이상	52	3.80	0.46			

## 인권교육 체감효과에 따른 인간중심 돌봄 수준 차이

인권교육 체감효과 그룹별 인간중심 돌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F=22.707$

유의확률( $p$ 값)=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인권교육 체감효과 그룹의 인간중심 돌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통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인간중심 돌봄 수준이 가장 높은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교육 체감 효과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검증
인간중심돌봄 (N=376)	전혀그렇지 않다	2.00	3.09	0.051	22.707	0.000	TuKey 방법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00	3.33	0.051			
	보통이다	134.00	3.40	0.44			
	그런편이다	185.00	3.78	0.46			
	매우 그렇다	39.00	4.01	0.45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취약 노인

1. 우리사회는 사회적 돌봄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를 가짐.
2. 노인돌봄 사회화 강조하지만,
3. 돌봄의 책임은 다른 조직이나 구성원의 몫이라고 생각
4. 공공은 민간에게, 가족은 사회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

#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기반 관점 사회복지는 인권의 속성과 기본가치에 바탕을 둬.



# 일터에서 존중받는 돌봄 종사자

헌법 제 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해 법적 미비사항을 입법적 보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완과 노력으로 해결 노력 절실

- 근본적으로 돌봄을 시장에 맡길것인가?
- 공동체에 맡길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

## 동기부여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자극하여 동기가 생기도록 유발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유도하고 이끌며,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

- 어떤 사람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족, 시민 등
- 어떤 목표 :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권 보호
- 행동자극 : 인권감수성(책임지각능력)
-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동기부여) :

조직문화, 조직 내 명확한 노인학대 예방활동 목표, 교육,  
인본주의 경영

## 구성원이 주인된다는 것은?

구성원이 **주인**되어 조직에 주어진 **문제(과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는것.

- 지시적 목표가 아닌 참여적 목표(상,하급자간 공동 목표 설정)
- 나는 조직의 문제해결 주체자
-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것

##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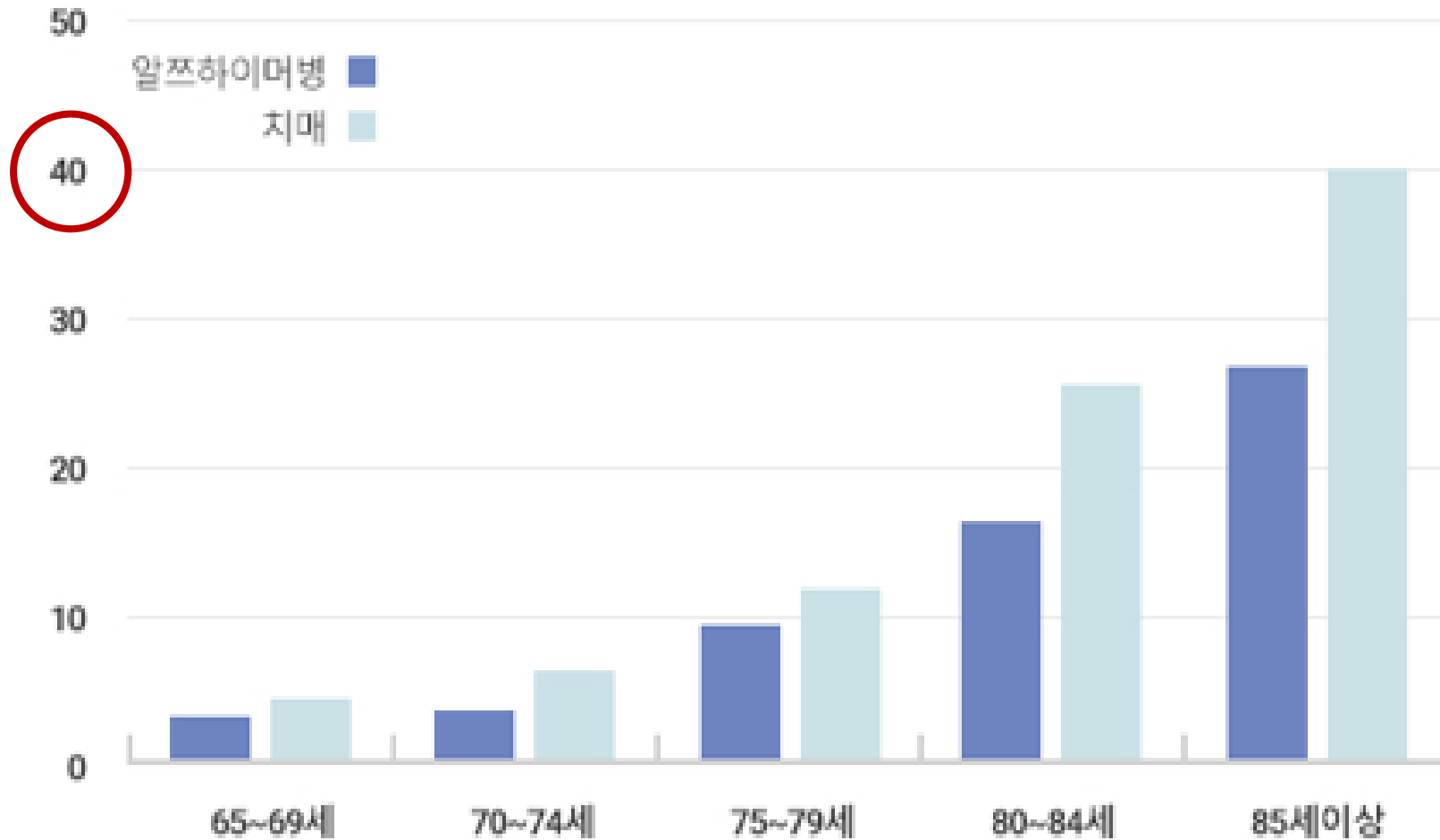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 돕고자 지원을 하고  
조직과 팀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제안을 하며,  
굳이 말을 안 해도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구성원이 있는 조직  
게다가 한 두 명도 아니라면,  
**그것은 그 조직의 문화이다.**

## 조직시민행동

- 조직에 규정상으로 정해진 직무행동이 아니어서 그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나,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을 말함

->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만족**에서 나옴.

# 85세이상 알츠하이머 치매 40%



출처 : 한국치매학회

# 치매의 핵심증상과 행동,심리증상

- 불안, 환각
- 폭언, 폭력
- 의욕이 없어짐
- 불면
- 배회



불안 · 환각



불면



배회



폭언 · 폭력



**핵심증상**

기억장애, 판단력 저하  
시간 장소를 모름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음



의욕이 없어짐

## 치매의 이상행동 및 심리증상의 빈도



예외	대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문제에 대한 대응, 대처
그 상황을 발생시킨 본인의 자원, 주위의 자원 =강점	굴하지 않는 힘, 노력, 판단력.주위의 지지 =강점
<p>어떻게 예외,대처 상황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어떤 노력의 결과인가?                      누가 지지해 주었는가?                      그 상황에서 당신의 어떤 점이 발휘되었는가?</p>	

출처: 학지사 출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기술

# 학대발생 촉발사건 예외 탐색

어떻게 예외, 대처 상황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어떤 노력의 결과인가?

누가 지지해 주었는가?

그 상황에서 당신의 어떤 점이 발휘되었는가?

# 0 노인인권 존엄케어

## 존엄케어란?

- 1 노인의 존엄을 이해하고 노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 권리 보호 및 보장 노력
- 2 노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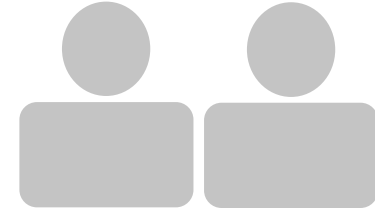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능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상시켜 드리기 위한 케어

## 존엄케어의 중요 포인트

- 1 욕구: 의사소통, 식사, 배설, 청결유지, 침대에서 벗어나기, 옷 갈아입기, 수면, 이동 등
- 2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지켜드리는 것이 노인 존엄케어의 중요 포인트

## 0 존엄케어가 필요한 이유



- 헌법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노인 인권보호 실천 사례

## 휴머니 튜드 케어(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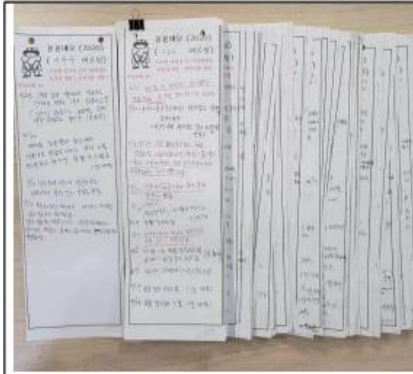


사진 1 품품 메모



사진 2 맞춤케어



사진 5 송O전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사진 6 강O재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사진 3 이O숙 어르신 운동 전



사진 4 이O숙 어르신 운동 후

출처: 2020년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존중케어 경진대회”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노인인권존중실천 경진대회' 우수작

군포시립 노인요양센터

어르신들의 즐거운 생활을 위한

5 가지 맞춤 케어!!



01

## 영역별 직접적인 서비스.

- 열린공감세상, 물리치료활동, 기능회복훈련 등



기능회복 훈련

Ex)

기본동작훈련- 균형잡기, 보행훈련 등  
신체기능유지훈련- 관절운동, 지구력운동 등  
일상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훈련 등

## 02

### 다양한 운동환경 조성

- 물리치료사가 직접 생활실로 찾아가는 서비스



입소자의 건강상태, 관절구축정도, 통증 호소 정도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생활실로 찾아가는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

스포밴드, 필라테스링 등을 활용하여 운동 할수 있는 환경 조성

## 03

### 결과 기록과 관리

요양보호사 함께  
개인별로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고 기록한다!



04

## 뉴스포츠 활동 진행

- 요양보호사와 입소자가 함께 활동

입소자 개인별 신체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소근육을 자극하여  
신체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05

##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의 화상통화 및 활동 사진 공유

-> 입소자의 우울감 해소 및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감 지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노인인권 존중실천 경진대회'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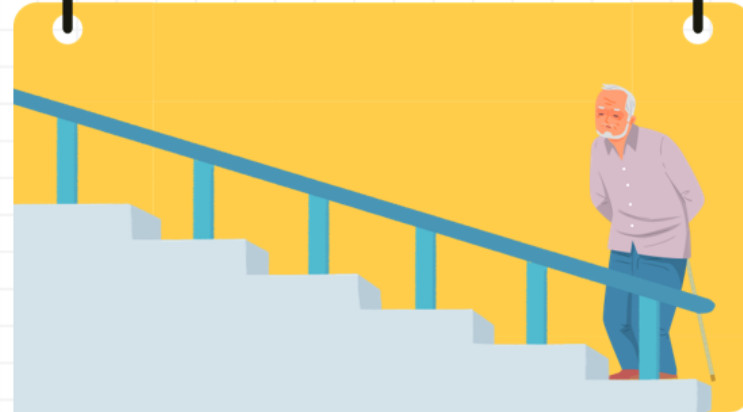
# 움직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

- 부천시은빛노인복지센터 -



첫 번째

## 현실적 목표 설정 : 한발씩 걷기



노인이 되면 체력과 신체 능력이 감소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두 번째

# 자리에서 일어나기



PASS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처음 실천을 시작 할때 쇼파와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

🔍 세 번째

# 안전봉을 잡고 서기 → 걷기



PASS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안전봉을 잡고 한 발씩 움직이면서 한 바퀴씩 돌고 횡수를 늘린다.

네 번째

# 아끼지 않는 걱려와 칭찬



경기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긍정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걱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활동 후 효과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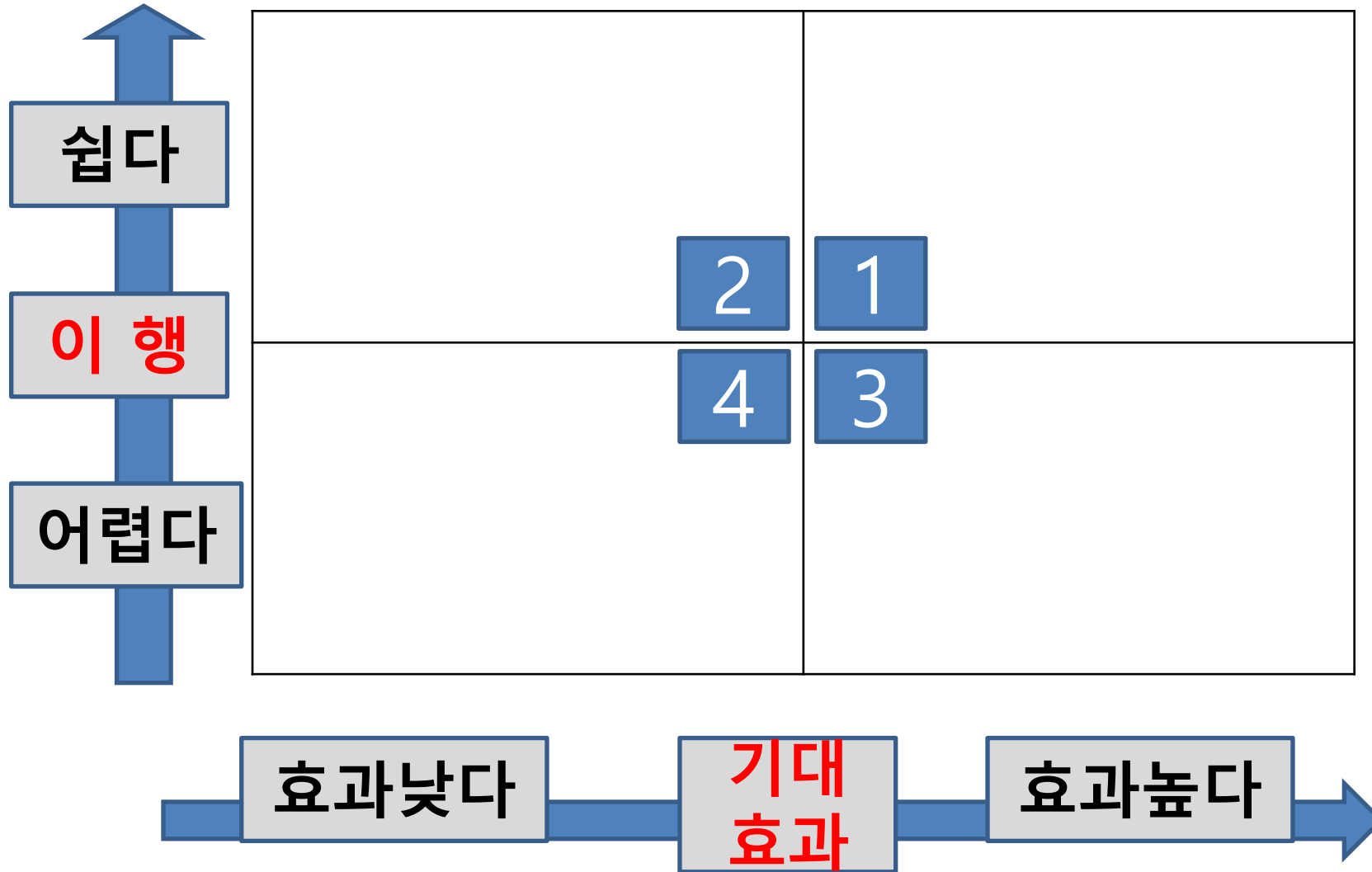


우울감 상승  
자존감 저하  
침상 및 소파 생활

AFTER



신체기능 향상  
침상생활 탈피  
자립 생활 가능



## 5) 응급조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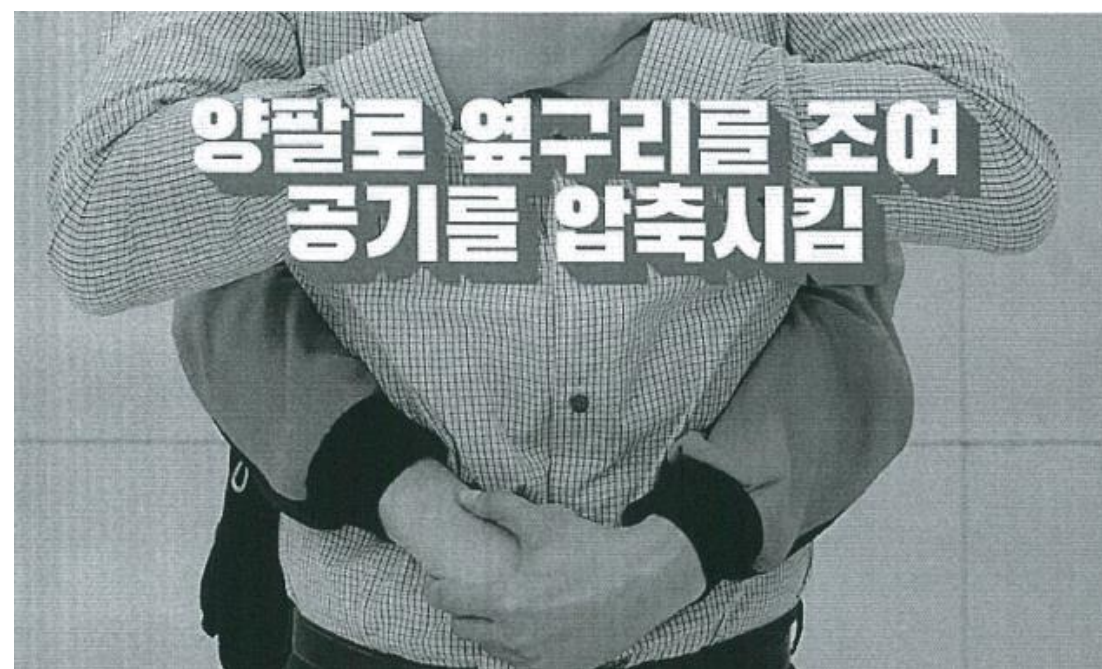
구분	응급조치방법
기도 폐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li> <li>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li> <li>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li> <li>4. 위 방법으로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li> <li>5. 바로 흡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li> <li>6.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한다.</li> </ol>
호흡곤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li> <li>2. 발견 즉시 간호(조무)사에게 즉시 알린다.</li> <li>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li> <li>4. 어르신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호흡을 격려한다.</li> <li>5. 필요 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li> </ol>
저혈당 쇼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상(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을 확인한다.</li> <li>2. 발견시 즉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li> <li>3. 응급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력증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li> <li>•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이 있을 경우: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1/2잔, 우유1잔, 주스(가당)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 술, 사탕3~4개, 초콜릿 3쪽, 꿀 1큰 술을 제공한다.</li> <li>▷ 의식이 없을 경우: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li> </ul> </li> </ul> </li> </ol>

## < 하임리히법 5단계 >

1. 대상 : 꼭 기도가 폐쇄된 사람에게 실시.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하임리히법이 해가 됨.
2. 완전히 기도가 폐쇄된 것이 확인되면 먼저 119에 신고
3. 그 다음에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쪽 다리를 환자 다리 사이에 넣고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
4. 양팔을 뺀어 한 쪽 주먹의 엄지손가락 면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줌. 이 때 엄지 손가락을 말아 쥐어서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이 압박점에 위치하도록 함. 압박점을 잘 확인하고 환자의 명치끝과 배꼽 사이 가운데



5. 그 후 빠르고 강하게 양팔로 옆구리를 조여 공기를 압축시켜 주먹을 감싼 손을 환자의 복부를 뒤쪽·위쪽(대각선)으로 강하게 밀쳐 올린다.



# 하임리히법 간단 정리

## ① 119 신고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스피커폰 상태로 신고

## ② 자세 잡기

환자 뒤에서 환자 다리  
사이에 다리 하나를 넣고  
앞굽이 자세

## ③ 압박 지점 찾기

환자의 명치끝과  
배꼽을 이은 가운데  
부분이 압박 지점

## ④ 손 모양

엄지를 손바닥에 넣어  
주먹을 쥐 뒤, 엄지 끝부분을  
압박 지점에 위치

## ⑤ 시행

다른 한 손으로  
손 뒷부분을 잡고 환자의  
배를 대각선 위로 당김

# 노인인권의 핵심

-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자기결정권 행사의 존중에 수반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 ▶ 정책으로 사전의료의향서, 고령자신탁, 지속적 대리권 등록, 후견 등

#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 기준

## 기능별로 판단하는 기준

▶ 의사결정이 필요한 개별 사안별로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도 있음

01

▶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02

▶ 의사결정에서의 여러 선택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지,

03

▶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뒤 어떤 선택할 할 수 있는지,

04

▶ 선택한 것을 외부에 전달할 수 있는지로 구분

각 단계에서 모두 “예”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우리는 인권 책임이행자(인권옹호자)

인권옹호자란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자



## 2023. 6.15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인권옹호 활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선언’





감사합니다